의 정 정 보

2006 - 11 11. 27

Ⅰ. 최근 개정 법령 1

Ⅱ. 선거관련 정보 9

<부 록> : 행복한 책읽기 11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법제자료담당관실 ☎ (042) 606-5021

Ⅰ. 최근 개정법령

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① 개정이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952호, 2006. 4. 28. 공포, 2006. 10. 29. 시행)이 개정되어 각급 학교의 장에게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정폭력 피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② 주요내용

○ 각급 학교의 장의 가정폭력 예방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아동과 청소년 등에게 가정폭력의 범죄성을 인식시키고 인권의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장래 발생 가능한 가정폭력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각급 학교의 장은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운영 등을 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아동과 청소년 등에게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폐해를 인식시키고 가정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의 취학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의 취학지원을 통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이를 비공개사항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함

-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취학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③ 시행일 :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① 개정이유

○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등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 입소노인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설정할 수 있는 저당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② 주요내용

○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체계적 관리

- 치매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종합병원·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하여금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체계적인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설정하는 저당권의 범위 제한

-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입소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 시설에 설정하는 저당권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유료 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복지주택 등에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당해시설의 건설원가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내실화를 기하고,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노인들의 입소보증금 회수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됨

○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의 개선

-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설비기준 및 인력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입소자가 10명 이상인 노인주거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합숙용 거실의 정원을 6명 이하에서 4명 이하로 하며,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시설에는 조리원을 2명 두도록 함

- 시설기준 등을 개선하여 노인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③ 시행일 : 2006년 10월 20일부터 시행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① 개정이유

○ 호흡기장애인 등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를 가정에서 받을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에 따른 요양급여절차를 개선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② 주요내용

○ 가정에서의 산소치료에 대한 보험급여(안 제15조)

- 호흡기장애인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환자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를 가정에서 받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환자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요양비를 지급함

-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에게 상시적인 치료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절차 개선

- 장애인이 보장구를 자비로 구입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구입비용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의 보장급여비 지급신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보장구의 급여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

-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③ 시행일 :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①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7670호, 2005.8.4. 공포, 2006.1.1. 시행)되어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기준의 적용시기를 명확하게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② 주요 내용

○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의 적용시기 명확화

- 종전 : 의정비심의위는 의정비 금액을 당해연도 10월말까지 정함

※ 의정비 결정금액의 적용시기에 대한 명문규정 없음

- 개정 : 의정비심의위에서 의정비 금액을 당해연도 10월 말까지 정하고 적용시기는 다음 연도부터 적용

※ 다만, 2006년도에 결정한 기준은 2006.1.1 부터 적용

○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시 주민의견수렴 절차 강화

- 종전 : 명문규정 없음

- 개정 : 의정비심의회는 의정비 금액을 결정할 때에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행일 : 2006년 10월 17일부터 시행

5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①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서 작성에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법률 제7663호, 2005. 8. 4 공포, 2006. 1. 1 시행)됨에 따라

○ 현행 현금주의와 단식부기 회계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② 주요내용

○ 기업형 회계방식의 도입(안 제2조 및 제5조)

-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일반적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와 보고사항에 관하여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를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공공회계책임의 적절한 이행 및 그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재무제표의 종류(안 제8조 및 제9조)

-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및 주석(註釋)으로 구성되며,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도록 함

○ 재정상태보고서(안 제10조 내지 제25조)

- 재정상태보고서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되며, 각 구성요소는 유동성 기준으로 배열되고 총액을 재정상태보고서에 계상하도록 함

○ 재정운영보고서(안 제26조 내지 제34조)

-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 및 비용으로 구성되며, 재정운영보고서의 비용은 기능별로 표시하고, 비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는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는 필수 보충정보로 보고하도록 함

○ 현금흐름보고서(안 제35조 내지 제37조)

- 현금흐름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경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현금자원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보여줌

○ 자산의 평가기준(안 제45조)

- 재정상태보고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상하되,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할 때에는 재정상태 보고서의 가액을 회수 가능가액으로 조정하도록 함

③ 시행일 :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9조 제3항·제35조 및 제56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Ⅱ. 선거관련 정보

□ 전자선거추진협의회 '08총선부터 '터치스크린 투표기' 도입키로 결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손지열)는 여·야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전자선거추진협의회(위원장 김용호 인하대교수)에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터치스크린 투표기를 도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월 전자투표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여·야 국회의원, 관련 정부부처 대표 및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2005년 3월부터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2005년 10월에 착수한 터치스크린 시범 투표기(1,300대)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일선위원회에 보급하여 마을회관·노인정을 순회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사용할 예정이다.

○ 시범 투표기는 개발과정에서 금년 상반기중 실시된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등 총 5회에 걸쳐 실제 선거에 사용한 바 있으며, 여야 정당을 불문하고 투표참여자의 90% 내외가 편리성과 투표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시하는 등 상당한 만족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선관위는 이번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일부

에서 제기하는 전자투표 실시여부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2008년도 국회의원선거시에 필요한 투표기의 50% 정도인 20,000대를 내년도에 사전 구축키로 하고 그에 소요되는 6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처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 또한, 터치스크린 투표기의 도입기반 조성을 위해 앞으로 재·보궐선거시 일부 선거구의 기초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와의 사전협의후 공직선거에 처음으로 도입·운영할 예정이다.

○ 그러나 전자선거추진협의회는 2007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터치스크린 투표기는 물론 어떠한 형태의 전자투표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 대통령선거는 기존 방식으로 진행된다.

○ 중앙선관위가 개발한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은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선거인명부가 전국망으로 공유되어 유권자들은 주소지를 벗어나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게 되고 특히 백화점, 시장, 전철역 등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터치스크린 투표기는 해킹 등 투표결과의 조작 등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각각 별개의 오프라인 형식으로 운영된다.

【자료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 록> : 행복한 책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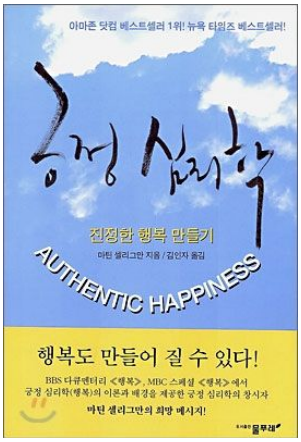

◑ 도서명 : 긍정 심리학

◑ 저자명 : 마틴 셀리그만

◑ 출판사 : 물푸레

◑ 출판년 : 2006년

◑ 페이지 : 416 쪽

2006년 공부벌레들만 모여 있다는 하버드대학교의 최고 인기 강좌가 긍정 심리학(행복론)이었다. 하버드대학교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100개 이상의 대학에서 긍정 심리학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영국의 BBC에서 슬라우라는 작은 도시를 대상으로 '행복 만들기' 프로젝트를 다큐멘터리(행복)으로 방영해 전 세계 주목을 받았고, 한국의 MBC에서도 MBC 스페셜 심리과학 '행복'을 2부작으로 방송해서 큰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이 처럼 전 세계의 '화두'는 긍정 심리학에 의한 '행복'이다. 지금까지 심리학이 불안,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 초점을 맞추었다면 긍정 심리학은 개인의 강점과 미덕 등 긍정적 정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긍정 심리학은 미국 심리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며, 30년간 우울증을 연구한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1998년 처음 사용한 용어다.

셀리그먼은 당시 미국 심리학회에 모인 청중들에게 “손쓸 도리 없이 망가진 삶은 이제 그만 연구하고 모든 일이 잘될 것 같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각자가 정한 가치 기준은 다르지만, 삶의 목적이‘행복’에 있음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일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여가생활을 즐기고, 그리고 사랑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행복은 현실에선 이룰 수 없는, 마치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게 여긴 채 포기하고 사는 예가 많다.

왜 행복해지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 것인가? 도대체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이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것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인류의 역사가 막을 내릴 때까지 함께 존재할 질문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이며 프로이트 이후 가장 주목받고 있는 마크 셀리그만이 심리학계에 신선한 변화를 일으키며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오랜 노력 끝에 완성시킨『긍정 심리학: 진정한 행복 만들기』에서, 행복해지려면 행복에 대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시각부터 바꾸라고 조언하며, 낙관적 · 긍정적 강점 키우기를 통해 내 안의 있는 행복을 끌어냄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담배는 노화의 특급열차

외모에 관심이 많은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담배를 끊어라. 금연은 최고의 노화방지 비법이다. 흡연은 최악의 경우 수명을 10년씩이나 단축시킨다. 뿐 만 아니라 피부 노화속도를 가속화시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도록 만든다.

담배를 피우면 피부 탄력을 제공하는 콜라겐이 파괴되고 피부 재생력이 떨어진다. 그 결과 피부가 축 늘어지고 주름살이 생긴다. 한쪽은 평생 담배를 피우고 다른 한쪽은 담배를 피우지 않은 일란성 쌍둥이들을 조사한 결과, 중년이 되었을때 전자의 '생물학적' 나이가 후자보다 열 살이나 많았다고 한다. 전자의 피부 두께가 40%나 더 얇고 주름살이 많았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흡연과 관련된 질병의 위험성은 폐암과 신장병만 봐도 알수 있다. 흡연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위험인데, 그 이유는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조기 폐경,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담배를 끊기만 하면 무수한 이로움이 있다. 우선 얼굴이 좋아진다.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몸에 활력이 생김은 물론이고 수명도 늘어난다.

문제는 담배를 끊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여성들은 금연 후 살이 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한다. 담배를 끊은 후 일시적으로 몇kg 정도 찌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담배를 끊기 전 체중이 키에 비해 많이 낮았거나 식욕억제를 위해 담배를 피운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찐 살은 쉽게 빠진다.

흡연 유혹을 물리치려면 결단력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첫 시도가 실패하면 다른 대안을 찾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계속 노력해야 한다. 그래도 담배를 끊을 수 없다면 노화방지제가 많이 들어 있는 밝은 색깔의 과일과 비타민C 등을 섭취해서 담배의 폐해를 조금이나마 줄여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노화방지를 위해 꼭 먹어여할 3가지

☞ 마 늘

마늘은 강장효과가 뛰어난 스태미나 식품 중 하나. 장수촌인 경남 남해와 이탈리아 몬티첼리가 마늘 주산지라는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닌 듯.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중국의 만리장성을 짓는 내내 인부들이 마늘을 먹었다는 속설도 있다.

항암효과가 높은 국산마늘을 생으로 먹는 것이 몸에 가장 좋다 마늘냄새의 근원인 알리신이라는 유황성분이 세포의 노화를 막고 호르몬 분비를 왕성하게 해서 노화를 예방해주는 것이다.

보통 생마늘의 경우는 하루에 1~2쪽, 마늘장아찌처럼 조리된 마늘은 그 두 배 정도인 2~4쪽을 먹으면 적당하다.

☞ 토마토

이탈리아인들의 건강 비결인 토마토에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노화방지 성분이 함유돼 있고, 전립선암 발생률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가 하면 관상동맥경화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효능이 탁월하다.

실제로 유럽에서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는 나라인 이탈리아에서는 매끼 식탁에 토마토가 빠지지 않는다. 토마토는 덜 익은 것보다 빨갛게 잘 익은 것을 먹는 것이 좋다.

☞ 적포도주

적포도주는 알코올과 항산화제를 모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음료인데, 이것이 바로 적포도주가 건강에 좋은 이유다.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면서 'NADH'란 물질을 만드는데, 이 물질은 상대를 환원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된 항산화제가 다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은 다시 알코올 분해에 관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하게 된다. 때문에 항산화제가 많으면서 알코올이 없는 적포도주가 건강에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